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운영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11. . .

제출자 : 구미시장

1. 제안이유

- 구미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조성된 환경자원화시설(소각, 매립)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시공 및 운영업체에 위탁 운영코자 함

2. 주요내용

- 위탁재산 현황
 - 건물명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 위치 :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 177-1
 - 규모
 - 부지면적 : 411,456m²
 - 환경자원화시설 면적 : 324,400m²
 - 백현체육공원면적 : 87,056m²
 - 건축면적 : 9,575.41m²
 - 연면적 : 17,256.83m²
 - 매립면적 : 68,276m²
 - 소각용량 : 200톤/일(100톤×2)
 - 재활용선별시설 : 50톤/일
 - 침출수처리시설 : 300톤/일
 - 조성비 : 1,184억원 (국비 344, 도비 12, 시비 828)

• 주요시설

구 분	주요시설명
관 리 동	사무실(5), 식당(1), 시청각실(1), 회의실(2) 등
소각시설동	중앙제어실(1), 반입장(1), 소각시설(2), 방지시설(2) 크레인실(1), 실험실(1) 등
재활용선별동	사무실(1), 휴게실(1), 재활용시설(1), 창고(1) 등
침출수처리동	사무실(1), 전기실(1), 대형폐기물보관장(1), 침출수처리시설(1) 등
주민편익시설동	목욕탕(남,여탕), 사무실(2), 회의실(1), 헬스장(1), 건강증진실(1), 행사장(1) 등
기타시설	축구장(1), 테니스장(1), 배드민턴장(3), 농구장(1), 야외공연장(1), 정비동(1), 세차동(1) 등

3. 운영보조금 : 5,824백만원

(단위:백만원)

계	고 정 비		변 동 비 (시설관리비)	기 타 (이윤및세금)	비 고
	인 건 비	일반운영비			
5,824	2,772	641	1,501	910	

4. 관련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재 산 현 황

구 분			건 물		토 지		비 고
			동 수	연면적 (㎡)	필 지	면적 (㎡)	
합 계			5	17,256.83	141	411,456	
공 유 재 산	행 정 재 산	공용재산					
		공공용 재 산	5	17,256.83	141	411,456	
		기업용 재 산					
		보존용 재 산					
	일반 재산	행정재산 외 모든 공유재산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위탁시설 현황

- 위 치 : 구미시 산동면 백현리 산 177-1
- 부지면적 : 411,456m²
- 용도지역 : 폐기물처리시설, 체육공원
- 시설규모
 - 건 축 면 적 : 9,575.41m²
 - 건축연면적 : 17,256.83m²
 - 매립시설면적 : 68,276m²
 - 백현체육공원면적 : 87,056m²
 - 건 축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일반철골조, 알루미늄복합판넬
 - 주 차 시 설 : 121면
- 시설내용 - 건축물
 - 관리동

층 별	면적(m ²)	주요시설	시 설 개 요
계	1,810.79		
지상1층	784.89	홍보관	식당, 대회의실, 전시실, 시민홍보교육실
지상2층	798.52	사무실	사무실(5), 소회의실, 창고(2), 휴게실
지상3층	227.38	사무실	사무실, 샤워실, 탈의실

• 소각시설동

층 별	면적(m ²)	주요시설	시 설 개 요
계	7,273.57		
지하1층	1,065.93	공조맞기계실	폐기물저장조, 공정수저장조, 펌프실
지상1층	2,978.29	폐기물반입장	폐기물반입장, 스토카소각로
지상2층	1,619.19	중앙제어실	중앙제어실, 연소가스처리실, 실험실
지상3층	623.02	휴게실	휴게실, 샤워장, 탈의실, 세탁실
지상4층	190.56	홀	홀, 복도
지상5층	796.58	크레인실	크레인조정실, 견학통로

- 재활용시설동

층 별	면적(m²)	주요시설	시 설 개 요
계	2,376.79		
지상1층	2,235.26	반입장	재활용품반입장, 선별장, 기계실, 사무실
지상2층	141.53	전기실	전기실, 휴게실, 운영실

- 주민편익시설동

층 별	면적(m²)	주요시설	시 설 개 요
계	3,108.15		
지상1층	1,281.67	행사장	지역행사장, 전시실, 사무실, 목욕탕
지상2층	1,020.16	헬스장	헬스장, 사무실(2), 세미나실, 문화강좌실
지상3층	806.32	건강증진실	건강증진실

- 침출수처리동

층 별	면적(m²)	주요시설	시 설 개 요
계	2,073.81		
지하2층	251.50	환기실	송풍설비 및 기계실
지하1층	1,078.96	폐수처리실	폐수처리설비(침전조, 폭기조등)
지상1층	743.35	사무실	사무실, 전기실, 탈수설비

- 기타시설

시 설 명	층 수	면적(m²)	시 설 개 요
계		774.53	
정 비 동	지상1층	259.05	정비실, 사무실
경 비 동	지상1층	46.65	경비실, 숙직실, 샤워장
계량기동	지상1층	34.40	계량시설
세 차 동	지상1층	224.64	세차실, 기계실
굴 독	80m	48.98	굴뚝
대형폐기물 보 관 장	지상1층	160.81	TV, 냉장고, 매트리스 보관장

○ 시설내용 - 설비별 부대시설

구 분	시 설 물 내 역		비 고
기계설비	폐기물크레인(2), 페이로다, 16톤암롤차량, 10톤암롤차량, 대형 폐기물파쇄기, 철금속선별기, 3원선별기, 소각로(2), 버너(6), 소각로유압장치(2), 화격자열교환기, 폐열보일러(2), 증기복수기 탈기, 반건식반응탑(2), 여과집진기(2), 선택적촉매반응탑(2), 증기식가스가열기(2), 증기터빈, 발전기, 압입송풍기(2), 유인 송풍기(2), 재추출기(2), 바닥재금속선별기, 비산재저장조, 생활용수 양수펌프(2), 공정용냉각수펌프(2), 가성소다탱크(2), 염산탱크(2), 황성탄여과기(2), 양이온교환수지탑(2), 음이온교환수지탑(2), 공기압축기(3), 악취배기송풍기, 냉각탑, 열교환기, 파봉기 트롬웰, 발리스틱, 마그네틱선별기, 알미늄선별기, 광선별기(4), 진동피더, 압축기(4), 분쇄기(3), 감용기(1), 유해가스흡착기, 포크레인, 콤팩트, 집게차, 탈수기(2), 스키로다, 전동지게차 등		
전기설비	수변전설비, 비상발전기, 전력시스템, 실내조명시설, 옥외보안등설비 등		
실험설비	쓰레기분석설비1식, 소각재열작감량분석기1식, 연소가스분석기 폐수분석기1식, 굴뚝자동측정기기(2)		
통신설비	CCTV(24), 구내통신선로, 구내유선방송설비 등		
소방설비	소화기구,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 설비, 유도등설비, 비상조명등설비, 비상방송설비 등		
방송설비	홍보실	음향장비1식, 영상장비1식	
	전관방송	음향장비1식	
	주민편의 시설 등	음향장비2식, 영상장비1식	
부대시설	조 경	소나무 외 7종(교목2, 332주, 관목37,650주), 초화류 17,405본, 잔디 39,119㎡, 파고라 8, 평의자 43, 등의자 25, 사각정자 7 등	
	체육시설	테니스코트, 인조잔디축구장, 농구대, 배드민턴대(3), 러닝머신(6), 벤치프레스 등 24종(25), 전동안마의자(3), 두타베드 등 9종(16)	
	주차장	121면[트럭 18, 대형차 6, 버스 2, 승용차 91(장애인 4 포함)], 자전거보관소 5	
	국기계양대	2식	

《위치도 및 조감도》

□ 위치도



□ 조감도



관 련 법 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0조 (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②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7.8.28>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 내지 第1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개정 1997.8.28>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35조 (권한·업무의 위임 등) ①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장·군수·구청장등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법 제11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1999.6.30>

②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9.6.30, 2002.8.8>

1.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2.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관이 시·도지사등인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법 제11조의3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및 공고
- ③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다음 각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4.6.11, 2005.3.8>

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 또는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한 법인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한 한국환경자원공사

3.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의하여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4.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당해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한다)
5.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4.24]

○ 「구미시 환경자원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6조(관리·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환경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 제35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전부 또는 분리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영 제35조제3항각호의 기관
2. 동일분야 시설 설치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미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이용자의 편익을 위하여 주민편익시설의 관리·운영을 제1항에 따른 수탁자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관련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